

# 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

의안 번호	16792
----------	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6. 2.

제안자 :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
## 1. 대안의 제안경위

### 가. 심사 경과

의안명	대표발의자	발의일	경과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2754호)	박홍배 의원	2025.09.05.	제429회 국회(정기회) 제6차 전체 회의(2025.11.14.) 상정 후 제안설명,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환 경법안심사소위원회 회부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제2214086호)	이용우 의원	2025.11.10.	「국회법」 제58조제4항에 따라 기 후에너지환경법안소위원회 직접 회 부(2026.01.30.)

나. 제432회 국회(임사회)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  
(2026. 2. 4.)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, 각 법률안을  
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하여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 
하였으며, 제432회 국회(임사회) 제1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
전체회의(2026. 2. 6.)에서 이를 심의·의결함.

## 2. 대안의 제안이유

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, 태풍, 가뭄 등 물 관련 재해의 빈도와 강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피해 규모가 대형화되고 있음. 이에 따라 국가는 홍수 예보, 수자원 시설 관리, 가뭄 대비 및 재해 예방 계획 수립을 위해 정확하고 체계적인 기초 수자원 자료를 생산·관리할 책임이 한층 중요해지고 있음.

그러나 현행 「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, 그 근거가 하위 법령과 행정규칙에 머물러 있어 법적 위상과 기능이 제한되고 있으며, 이로 인해 수자원조사 기술의 표준화·첨단화·통합관리 체계 구축에도 한계가 있는 실정임.

따라서 본 개정안은 수문조사 전담기관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, 그 기반 위에서 기술표준화·첨단화·실증화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”으로 법률에 명시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수행 가능한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.

이를 통해 수문조사 기능을 단순한 조사 수행 중심에서 벗어나 기술개발·검정·표준화·데이터 품질관리 중심의 과학적 체계로 고도화하고, 국가 수문정보의 신뢰도 제고 및 재해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

### 3. 대안의 주요내용

- 가. 현재 관계 법령 및 고시에 따라 지정되는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“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”으로 법률에 명시함(안 제9조제6항).
- 나.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·운영 근거를 마련하고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지원 근거 규정과 수행가능 사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등을 신설함(안 제9조의2 신설).

## 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삭제한다.

-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.

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의2(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)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한다.

- 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·부설 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- 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·계획·관리 및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, 수문조사 관련

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,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와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·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·감독한다.

⑥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
## 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) ① 이 법 시행 당시 「민법」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(이하 “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”이라 한다)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으로 본다.

②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「민법」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.

③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

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모든 재산과 권리·의무를 승계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포괄승계된 재산과 권리·의무에 관한登記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를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명의로 본다.

⑤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행한 행위나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행위나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.

⑥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의 원장을 포함한 임직원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의 임직원으로 보며,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.

⑦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이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.

제3조(사업계획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)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설립 당시 재단법인 수자원조사기술원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사업계획과 예산안 등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이 승인받은 것으로 본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9조(수문조사의 실시) ① ~ ⑤ (생략)</p> <p>⑥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 시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문조사 전담기관을 지정하고, 수문조사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.</u></p> <p>⑦ <u>국가는 수문조사 전담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.</u></p> <p>⑧ <u>수문조사 전담기관의 지정·운영,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&lt;신설&gt;</u></p>	<p>제9조(수문조사의 실시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문조사의 시행을 위하여 제9조의2에 따른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을 수문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.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&lt;삭제&gt;</u></p> <p><u>제9조의2(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)</u></p> <p>① <u>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자원의 조사와 계획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물재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(이하 “기술원”이라 한다)을 설립·운영한다.</u></p>

② 기술원은 법인으로 하며,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원·부설기관 또는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.

③ 기술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자원의 조사·계획·관리 및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며, 수문조사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과 실증, 수문조사시설의 표준화 및 첨단기술을 활용한 수문조사체계 구축 등 국가 수자원 관련 기술의 표준화 및 고도화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술원의 설립·운영과 제3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.

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원을 관리·감독한다.

⑥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